

경력 우수 교수 초빙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 (강의전담 전임교원, 전문/특수대학원 전임교원)

[공통 지원자격]

-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[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(결격사유)]
(신규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함)
-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(기 가입된 국민, 공무원 또는 군인 연금 등을 중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을 해야 함)
- 인터넷 지원 마감일 기준,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-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, 연구, 실무(작품활동¹⁾ 포함) 경력 년수의 합이 35년(군경력 합산) 이상인 자
 -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 후 학위 취득까지 소요된 기간 내에서 최대 각각 2년과 3년을 실무 경력 기간으로 인정함.
 - 동일기간 중의 복수경력은 이중 한 가지만 인정함.
- 인터넷 지원 마감일 기준 최근 약 5년 이내(2018.3.1. 이후) 기간 중 대학에서 지원분야의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
- 본교 비전임교원(겸임, 초빙, 강사)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.

[모집분야]

교양(인문·사회) 및 건축·미술·디자인·공예 등

[계약 및 근무조건]

강의전담 전임교원

- 계약연한 : 2년 단위 재계약 (2024. 3. 1.자 임용 예정)
- 근무조건 : 주 4일 이상 전일근무, 책임학점 12학점 원칙
(일부 분야의 경우 상근일 주 3일, 책임학점 6학점 또는 9학점으로 임용될 수 있음.)

전문/특수대학원 전임교원

- *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현업활동을 겸하도록 하며, 상근일 1일과 책임학점 3학점을 경감함.
- 계약연한 : 2년 단위 재계약 (2024. 3. 1.자 임용 예정)
- 근무조건 : 주 3일 이상 전일근무, 책임학점 6학점 원칙

1) 단, 작품활동의 경우 5년 이내만 경력연수로 인정함. (예: 작품활동 경력연수 계산 시, 개인전 개최(2000년)와 바로 다음 개인전 개최(2007년) 시점 사이의 연수가 7년(2007-2000=7)인 경우 5년만 경력 연수로 인정함)